힐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완공하여 2024.01.25. 사용 허가 승인 받은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16(금)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나 세대에 속한 분 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역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외국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으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0	0	X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 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 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 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전매제한기간은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에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4년 03월 05일(화)	03월 06일(수)	03월 11일(월)	03월 14일(목) ~ 03월 15일(금)	03월 18일(월)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고문 09페이지 참조	_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22일 15 힐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H리셉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22일 15 힐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H리셉션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견본주택 접수 불가)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흠"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주택과 - 6006호(2024.0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하로 22길 15 힣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최고층수 29층 6개동 총 454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1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일반공급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18일(월) ~ 2024년 05월 01일(수)

■ 공급대상

(단위:m². 세대)

주택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구분	주택관리번호 -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다자녀 가구	세대수
	2024020010	01	084.9124B	84B	84.9124	25.9249	110.8373	53.8077	164.6450	44.0158	1	1	0
민영 주택	2024930010	02	099.7950	99	99.7950	28.0452	127.8402	63.2387	191.0789	51.7304	1	0	1
75					Ē	합 계					2	1	1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그 외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청약관리 시스템 필요로 인하여 소수점 4자리 표시를 위해 "0"을 추가하였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인허가청에 비치한 사업승인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기	주택형	Ę	5		분양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작약표기	TES	5	<u> </u>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Я	계약시	2024.05.01	0177
84B	084.9124B	103	1203	94,150,654	237,049,346	-	331,200,000	33,120,000	298,080,000	
99	099.7950	105	2701	108,593,754	286,806,246	28,680,625	424,080,625	42,408,062	381,672,563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은 2024년 01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관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기 선택하여 공사가 완료된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 품목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 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내역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주)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계약체결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3-388518 신한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현장 수납 불가)
- ※ 중도금 및 자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김현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공사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기	주택형	E	=	발코니 흑	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작약표기	758	10	2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 품목	Я	계약시	2024.05.01	υlπ
84B	084.9124B	103	1203	27,000,000	1,080,000	28,080,000	2,808,000	25,272,000	
99	099.7950	105	2701	33,000,000	12,070,000	45,070,000	4,507,000	40,563,000	

-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동-호수별로 기재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동호수에 선택되어 공사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의 변경, 추가 및 취소 등이 불가합니다. 정확 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5621-4988-400015	신한자산신탁(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신한은행	5621-4899-992416	현대건설(주)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계약체결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아파트 계약일에 선택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모계좌(신한은행, 140-013-388557, 신한자산신탁(주)), 추가선택품목 모계좌(신한은행, 140-013-497656,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김현대 →"1010101김현대")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제 공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상세 내역

약식표기	주택형	동	호		추가 선택 품목	가격	비고			
					(기본형)욕조형	-				
84B	004.01040	100	1000	1000	4000	무상	(기본형)파우더장(좌식)	-		
848	084.9124B	103	1203		84B_(기본형)알파룸, 침실1, 파우더룸	-				
				유상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1,080,000	현관중문			
						(기본형)욕조형	-			
							무상	(기본형)파우더장(좌식)	-	
					(기본형)침실2,3 분리형	-				
					99_전실_거실,주방,침실1,2,3(총5개소)_LG	7,810,000	시스템에어컨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1,080,000	현관중문			
99	099.7950	105	2701		99_벽지→포세린타일	280,000	복도아트월			
				유상	99_타일→엔지니어드스톤	1,330,000	주방벽체			
				πO	99_강마루→브러쉬마루(전실)	560,000	바닥마감			
					슬라이딩도어(드레스룸)	120,000	슬라이딩도어			
					쿡탑3구 인덕션(SK매직)	460,000	3구 인덕션			
					기능성오븐(LG전자)	430,000	기능성오븐			

[※] 본 주택은 동-호수별로 기재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동호수에 선택되어 공사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의 변경, 추가 및 취소 등이 불가합니다. 정확 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П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 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해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작계비속(작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작계비속(작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ш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2024.03.05(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024.03.06(수) 09:00~17:30	· 현디팟 영국 (FU 모든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흠"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 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청약홍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기관(정보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 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 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채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에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에 되면, 당첨 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일시: 2024.03.11.(월) • 확인방법	• 일시 - 2024.03.14.(목) ~ 15(금) (10:00~16:00)	• 일시 - 2024.03.18.(월) (10:00~16:00)
일반	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www.applyhome.co.kr</u>)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22길 15 힐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H리셉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22길 15 힐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H리셉션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em'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3.11.(월) ~ 2024.03.20.(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u>www.applyhome.co.kr</u>)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4.03.11.(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공통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 경우 ※ 군 복무 기간 (10년 이상) 명시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0	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청약 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0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3 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 이상으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상기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제출 필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일반공급		0	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세대원	• 청약 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부적격 통보		0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해당 주택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0	무허가 건물 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받은자		0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원근사 		0	기타 무주택자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0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본인 발급, 위임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당첨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접수합니다.(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 구성원의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 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 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임장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서르으형

	시큐	ਜੱਲ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본인 계약 시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0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	
		0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소명자료)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0		전자수입인지	-	•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지참	
※ 본인 이외에는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대리 계약시 추가	0		인감도장	계약자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구비서류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기타 유의 사항

٧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청약하시기 전에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여러 유의사항을 충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신한자산신탁㈜	현대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 - 3543801	110111 - 0007909

- 분양사무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22길 15 힐스테이트 익산더퍼스트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H리셉션
- 분양문의: 063-837-7725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모집공고이며 청약자는 최초 분양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